

2011. 3. 14. (월) 10:00

제173회 거창군의회 임시회
제2차 본 회의

조례안 심사 보고서

총무위원회

【 목 차 】

1. 거창군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조례안----- 1
2. 거창군 노인등 장기요양급여 이용에 따른 본인일부부담금
지원조례안 ----- 5
3. 거창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----- 9
4. 거창군 수입증지조례 일부개정조례안----- 12
5. 거창군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--- 14

거창군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조례안

심 사 보 고 서

1. 심사경과

- 가. 제출일자: 2011. 2. 28.
- 나. 제출자: 거창군수
- 다. 회부일자: 2011. 3. 2.
- 라. 상정 및 의결일자: 2011. 3. 11.
- 마. 의안번호: 제2011 - 9호

2 제정이유

- 「지방재정법」 및 같은 법 시행령 전부개정(2006. 1. 1시행)으로 지방예산편성과정에 주민참여제도가 도입되어 주민참여 예산의 범위와 주민의견수렴에 관한 절차 및 운영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함에 따라
-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으로써 예산 운용의 투명성과 효율성 증대에 이바지 하기 위함.

3 주요내용

- 가. 조례의 목적과 용어의 뜻을 정의함(안 제1조, 제2조).

- 나. 이 조례에 따른 예산 편성과정에서의 주민참여 보장의 성격 과 그 활동 범위에 관하여 규정함(안 제3조).
- 예산 편성과정에의 주민참여 보장은 「지방자치법」 과 「지방재정법」 및 그 밖의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에 관한 법령을 위반해서는 아니되며, 주민참여는 주민의 자발적인 참여와 협력을 기본 정신으로 하여 군의회의 예산심의권을 침해하지 않고 군수의 예산편성권 행사의 범위에서 이루어져야 함.
- 다. 예산 편성과정에의 주민참여 보장에 관한 군수의 책무와 의견 제출에 관한 주민의 권리에 관하여 규정함(안 제4조, 제5조).
- 라. 예산 편성과정에의 주민의견수렴에 관한 절차 및 운영방법에 관하여 규정함(안 제6조부터 제10조까지).
- 군수는 매년 주민참여예산제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군 공보나 군 홈페이지 또는 게시판 등을 통하여 일정 기간 공고하고, 주민은 그 운영계획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편성 관련 의견을 제출하며, 군수는 제출된 의견수렴 결과를 군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하도록 함.
 - 군수는 주민의 의견수렴을 위하여 주요사업에 대한 공청회 또는 간담회를 개최하거나 서면 또는 인터넷설문조사, 사업공모 등을 실시할 수 있으며, 주민참여예산제의 효율적 운영과 활성화를 위하여 주민참여 예산연구회 및 협의회 등을 둘 수 있도록 함.
- 마. 조례의 시행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함(안 제11조).

4.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

- 이 제정 조례안은 지방재정법 및 같은법 시행령 전부개정(2006. 1. 1시행)으로 지방예산편성과정에 주민참여제도가 도입되어 주민참여 예산의 범위와 주민의견수렴에 관한 절차 및 운영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조례로써,
 - 그 주요내용을 보면
 - 안 제3조에서는 예산편성과정에의 주민참여 보장의 성격과 그 활동범위에 관한 법령준수 의무를 규정하고,
 - 안 제4조 및 제5조에서는 예산편성과정에 주민참여 보장에 관한 군수의 책무와 의견제출에 관한 주민의 권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.
 - 안 제6조는 예산편성 방향, 주민참여 예산의 범위, 주민의견수렴에 관한 절차·운영방법 등 주민참여예산제 운영계획을 수립 및 공고하도록 하고,
 - 안 제7부터 제10조까지는 주민의 의견수렴절차, 결과공개, 연구회 운영 등에 관하여 규정하였으며,
 - 이 밖에 조례 운영상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제정·운영토록 규정하고 있음.
- 이 제정 조례안은 행정안전부로부터 표준안과 모델안이 통보(2010. 11. 1)되어 제정하는 것으로써 조례제정과 관련한 형식이나 체계상 문제점 및 상위법령 등 관련 규정상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음.

5. 질의 및 답변요지: 생략
6. 토론요지: 해당없음
7. 수정안 요지: 해당없음
8. 심사결과: 원안가결
9. 소수의견 요지: 해당없음
10. 기타 필요한 사항: 해당없음

거창군 노인등 장기요양급여 이용에 따른 본인일부부담금 지원조례안 심 사 보 고 서

1. 심사경과

- 가. 제출일자: 2011. 3. 2.
- 나. 제출자: 거창군수
- 다. 회부일자: 2011. 3. 2.
- 라. 상정 및 의결일자: 2011. 3. 11.
- 마. 의안번호: 제2011 - 17호

2. 제정이유

- 2008년 7월 1일부터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가 시행되어 관내의 65세 이상의 노인들 중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이나 65세 미만이라도 노인성 질환을 앓고 있는 분들이 장기요양 서비스를 받고 있으나,
- 본인일부부담금 납입이 어려워 장기요양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등 노인 복지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어 본인일부부담금을 지원하여 이를 해소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.

3. 주요내용

- 가. 조례의 목적과 용어의 뜻을 정의함(안 제1조, 제2조).
 - “본인일부부담금”이란 「노인장기요양보험법」 제40조제1항에 따른 재가 및 시설 급여비용 중 수급자가 부담하는 비율을 말함.

- 나. 이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의 범위에 관하여 규정함(안 제3조).
- 지원대상은 「의료급여법」 제3조에 따른 수급권자가 아닌 자로서 통계청 가계조사자료 전국가구 월 평균소득 150퍼센트 이하인 자 중 장기요양등급판정을 받아 재가급여 또는 시설급여를 받고 있는 노인등으로 함.
- 다. 본인일부부담금은 장기요양급여의 종류, 장기요양등급 및 장기요양급여비용 등을 고려하여 그 세부지원기준을 별표와 같이 규정함(안 제4조).
- 재가급여
 - 감경1등급~감경3등급: 본인일부부담금의 60% 이내
 - 일반1등급~일반3등급: 본인일부부담금의 30% 이내
 - 시설급여
 - 감경1등급~감경3등급: 본인일부부담금의 30% 이내
 - 일반1등급~일반3등급: 본인일부부담금의 15% 이내
- 라. 지원대상자 신청 및 지원절차, 조사, 지급시기 및 방법, 지급 중지 및 환수, 중복지원 금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(안 5조부터 제11조까지).

4.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

- 이 제정 조례안은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의 사유로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등의 장기요양급여 이용에 대한 본인일부부담금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조례로써,
- 그 주요내용을 보면

- 안 제3조 및 제4조에서는 본인일부부담금의 지원대상과 지원기준을 명확히 규정하고,
 - 안 제5조 및 제6조에서는 신청 및 지원절차, 신청의 조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.
 - 안 제7조 및 제8조에서는 지급시기 및 방법, 수급자의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,
 - 안 제9및 제10조에서는 지급중지 및 환수, 중복지원금지에 관한 사항을 상세히 규정하였으며,
 - 이 밖에 조례 운영상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제정·운영토록 규정하고 있음.
- 이 제정 조례안은 수혜자 380명에 년 간 약 1억 7천 8백만원의 예산이 소요되며 개인별로는 월 36,600원에서 51,320원정도 본인일부부담금을 지원하는 조례로서 이 조례가 시행되면 본인일부부담금 납입이 어려워 장기요양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사람에게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이 됨.
- 현재 경남에서는 합천군과 진주시가 시행하고 있으며 합천군은 년 간 2억원 정도, 진주시는 년 간 7억원 정도의 지원을 하고 있음.
- 조례로 제정함에 있어 관련한 형식이나 체계상 문제점 및 상위법령 등 관련 규정상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음.

5. 질의 및 답변요지: 생략
6. 토론요지: 해당없음
7. 수정안 요지: 해당없음
8. 심사결과: 원안가결
9. 소수의견 요지: 해당없음
10. 기타 필요한 사항: 해당없음

거창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

심 사 보 고 서

1. 심사경과

- 가. 제출일자: 2011. 2. 28.
- 나. 제출자: 거창군수
- 다. 회부일자: 2011. 3. 2.
- 라. 상정 및 의결일자: 2011. 3. 11.
- 마. 의안번호: 제2011 - 10호

2. 제정이유

「국가보훈기본법」 등 국가보훈관계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국가보훈대상자와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통합·운영함으로써 국가를 위하여 희생·공헌한 사람의 명예를 선양하고 군민의 나라사랑정신 함양에 이바지 하기 위함.

3. 주요내용

- 가. 조례의 목적과 용어의 뜻을 정의하고, 공훈선양을 위한 시책 추진에 따른 군민 협조 등 책무에 관한 사항을 제1장 총칙으로 규정함(안 제1조부터 제3조까지).
- 나. 이 조례에 따른 예우 및 지원 대상, 국민의례 및 의전상의 예우, 희생·공헌자의 공훈과 나라사랑정신을 선양하기

위한 공훈선양 사업의 추진, 보훈단체의 지원, 군에서 관리하는 공공시설의 이용지원 등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등에 대한 예우 및 지원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제2장에서 규정함(안 제4조 부터 제9조까지).

다. 국가보훈관계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보상금이나 사망일시금 등 보훈급여금 외에 군 조례로써 지급하는 명예수당 및 사망위로금의 지급대상과 지급금액, 지급신청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제3장에서 규정함(안 제10조부터 제13조까지).

○ 명예수당

- 참전유공자: 월 3만원 → 월 5만원

- 전몰군경의 유족: 월 3만원(신설)

○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: 20만원 → 30만원

○ 지급시기: 매분기 → 매월

라. 그 밖에 참전유공자 및 전몰군경의 유족에게 지급하는 명예수당의 지급중지 사유와 환수 등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을 제4장 보칙으로 규정하고,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조례와 참전유공자 지원조례를 통합한 조례 제정에 따른 현행 조례의 폐지사항을 부칙으로 규정함(안 제14조부터 제17조까지, 안 부칙 제2조).

4.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

○ 이 제정 조례안은 종전의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조례와 참전유공자 지원조례를 통합하여 국가보훈기본법 등 국가보훈관계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및 보훈단체에 대한 예우와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조례로써,

- 그 주요내용을 보면
 - 제1장 총칙에서는 조례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, 공훈선양을 위한 시책추진에 따른 군민 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,
 - 제2장에서는 예우및 지원 대상, 행사상 예우, 공훈선양 사업의 추진, 보훈단체 지원, 공공시설 이용지원,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.
 - 제3장에서는 명예수당 과 사망위로금의 지급대상 및 지급기준, 지급신청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
 - 제4장 보칙에서는 명예수당의 지급중지 및 환수, 시행규칙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.
- 다만, 안 제10조에서 명예수당 지급대상에 ‘전몰군경의 유족’을 신설한 사유, 명예수당 및 사망위로금 인상사유 그리고, 참전유공자와 전몰군경 유족의 명예수당 금액의 차등사유 등에 대한 상세한 설명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며,
- 이 밖에 상위법 저촉사항이나 조례의 형식 및 체계상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음.

5. 질의 및 답변요지: 생략

6. 토론요지: 해당없음

7. 수정안 요지: 해당없음

8. 심사결과: 원안가결

9. 소수의견 요지: 해당없음

10. 기타 필요한 사항: 해당없음

거창군 수입증지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심 사 보 고 서

1. 심사경과

- 가. 제출일자: 2011. 2. 28.
- 나. 제출자: 거창군수
- 다. 회부일자: 2011. 3. 2.
- 라. 상정 및 의결일자: 2011. 3. 11.
- 마. 의안번호: 제2011 - 11호

2. 개정이유

- 주민등록관리시스템에 수입증지의 전자이미지정보를 연계·구축하여 주민등록등·초본 발급 시 수입증지 전자날인 발급이 가능하도록 함에 따라 주민등록관리시스템을 통한 수수료 납부방법을 추가하는 등 관련 조례를 정비하기 위함.

3. 주요내용

- 수입증지의 전자이미지정보를 주민등록관리시스템에 연계·구축하여 주민등록등·초본 발급이 가능하도록 하는 「주민등록 등·초본 수입증지 전자날인 실시계획」에 따라,
- 현행 수입증지 요금계기와 무인민원증명발급기 사용을 통한 수수료 납부방법이나 수입금 정산 사항 등에 주민등록관리시스템을 사용하는 경우를 추가하여 규정함(안 제6조,

제7조, 제16조, 제17조).

4.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

- 이 개정 조례안은 「주민등록 등·초본 수입증지 전자날인 실시계획」 이 행정안전부로부터 통보(2010. 12. 8.)됨에 따라 일부내용을 변경하는 것으로써,
- 수입증지의 전자이미지정보를 주민등록관리시스템에 연계·구축하여 주민등록등·초본 발급 시 수입증지 전자날인 발급이 가능하도록 행정안전부에서 관련프로그램을 개발완료 하였음.
- 현행 수입증지 요금계기와 무인민원증명발급기 사용을 통한 수수료 납부방법이나 수입금 정산사항 등에 주민등록관리시스템을 사용하는 경우를 추가하여 규정하였음.
- 상기와 같이 이 개정조례안은 주민등록표(등·초본) 교부시 기존 수작업에 의한 인증기의 날인 대신에 전자적으로 날인 발급함으로써 신속한 민원처리 등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므로 개정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됨.

5. 질의 및 답변요지: 생략

6. 토론요지: 해당없음

7. 수정안 요지: 해당없음

8. 심사결과: 원안가결

9. 소수의견 요지: 해당없음

10. 기타 필요한 사항: 해당없음

거창군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조례
일부개정조례안

심 사 보 고 서

1. 심사경과

- 가. 제출일자: 2011. 2. 28.
- 나. 제출자: 거창군수
- 다. 회부일자: 2011. 3. 2.
- 라. 상정 및 의결일자: 2011. 3. 11.
- 마. 의안번호: 제2011 - 12호

2. 개정이유

- 거창국민체육센터 조성사업의 준공에 맞추어 수영장과 탁구장의 개장, 종료시간과 휴무일, 사용료 징수기준 등을 정하고, 체육시설 사용료 감면대상을 추가하며, 체육시설 사용자의 사고책임 및 관리위탁 행정재산의 수탁기간 갱신에 관한 현행 조례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·보완함으로써,
- 체육시설의 효율적인 관리·운영과 사용자의 편의를 도모하고 군민의 건강 증진 및 건전한 여가 선용에 이바지 하기 위함.

3. 주요내용

- 가. “체육시설”에 ‘국민체육센터’(수영장, 탁구장 포함)와 ‘사격장’을 추가하여 규정하고, “단체”에 대한 용어의 뜻을 신설함

(안 제2조제1호, 안 제2조제13호 신설).

- “단체”란 특정단체 또는 동일조직의 구성원 20명 이상이 인솔자에 의하여 동시에 입장하는 것을 말함.

나. 체육시설의 연중 개장 및 종료시간을 국민체육센터와 국민체육센터를 제외한 체육시설로 구분하고, 국민체육센터의 휴무일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(안 제6조).

○ 개장 및 종료시간

- 국민체육센터: 오전 6시부터 오후 10시까지
(공휴일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).
- 국민체육센터를 제외한 체육시설: 오전 6시부터 오후 10시까지
(6월부터 9월까지의 개장시간은 오전 5시).

○ 휴무일(국민체육센터)

- 매주 월요일, 매년 1월 1일, 설연휴, 추석연휴, 그 밖에 시설보수 또는 점검 등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정하는 날.

다. 체육시설 사용료의 100분의 50을 경감할 수 있는 대상을 추가하여 규정함(안 제15조제3항 신설).

- 국민기초생활수급자, 국가유공자(애국지사 및 상이등급 1급에 해당 하는 사람의 활동을 보조하는 사람 1명 포함)와 그 유족, 장애인(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등급의 장애인을 돌보는 사람 1명 포함).

라. 체육시설에 ‘국민체육센터’와 ‘사격장’을 추가함에 따라 그 세부시설별·사용기준별 및 사용자별로 구분하여 사용료를 신설함(안 별표).

마. 그 밖에 체육시설 사용자의 사고책임에 관한 사항과 관리 위탁 행정재산의 수탁기간 갱신에 관한 경남도의 자치법규 개선권고 사항을 반영하여 「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

시행령」 등 관계 법령에 맞게 개선·보완함(안 제20조제3항, 제23조제5항).

4.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

- 이 개정 조례안은 거창국민체육센터 준공에 따른 수영장 및 탁구장의 운영시간, 사용료 징수기준 등을 정하고 일부 미비점을 개선·보완하기 위하여 변경하는 것으로써,
- 안 제2조에서는 “체육시설”에 ‘국민체육센터’와 ‘사격장’을 추가하고, “단체”에 대한 용어의 뜻을 신설하였고,
- 안 제6조에서는 국민체육센터의 개장 및 종료 시간, 휴무일을 명확하게 명시하였으며,
- 안 제15조제3항을 신설하여 국민기초생활수급자, 국가유공자, 장애인에게는 사용료의 100분의 50을 할인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음.
- 안 제20조제3항은 사용자의 책임에 있어서 최소 침해에 대한 비례원칙을 위반한 조항으로 경남도의 개선권고를 반영하였고,
- 안 제23조제5항은 체육시설을 관리 위탁하는 경우로써 상위법인 ‘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’에 위반한 조항으로 법률명확성의 원칙에 따라 경남도의 개선권고를 반영하였음.
- 안 별표에서는 체육시설에 ‘국민체육센터’와 ‘사격장’을 추가함에 따라 그 세부시설별·사용기준별 및 사용자별로 구분하여 사용료를 신설하였으며,
- 다만, 수영장, 탁구장, 사격장의 사용료 산정과 운영시간 등에 대한 상세한 설명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됨.

- 위와 같이 이 개정조례안은 신설된 체육시설 운영에 따른 각종기준과 사용료 감면대상을 추가하고 현행 조례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·보완함으로써 체육시설의 효율적인 관리·운영과 사용자의 편의를 도모하고 군민의 건강증진 및 건전한 여가 활동에 이바지 하기 위한 것으로써 타당한 것으로 사료됨.

5. 질의 및 답변요지: 생략

6. 토론요지: 수정안 발의

7. 수정안 요지: “1회 1시간”을 “1회 2시간”으로 수정

[별표]

거창군 체육시설 사용료(제11조제1항 관련)

■국민체육센터

(단위 : 원)

< 당 초 안 >

시 설 명	구 분		어린이·노인	청소년·군인	일반인	비 고
수 영 장	1회권	개 인	1,500	2,000	2,500	1회 1시간
		단 체	1,300	1,700	2,200	“
	월사용	1개월	30,000	40,000	50,000	“
		12회	16,000	21,000	27,000	“

< 변 경 안 >

시 설 명	구 분		어린이·노인	청소년·군인	일반인	비 고
수 영 장	1회권	개 인	1,500	2,000	2,500	1회 2시간
		단 체	1,300	1,700	2,200	“
	월사용	1개월	30,000	40,000	50,000	“
		12회	16,000	21,000	27,000	“

8. 심사결과: 수정가결
9. 소수의견 요지: 해당없음
10. 기타 필요한 사항: 해당없음